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[]허가 []협의 []승인 신청서

※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[]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유의사항 참조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(성별)		
	주소	전화번호		
대리인	성명	전화번호		
변경사항		변경 전	변경 후	
	면적	m ²	m ²	
	목적			
	기간	· · · ~ · · ·	· · · ~ · · ·	
	조건			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(제10조제2항)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(제9조)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변경([] 허가 [] 협의 [] 승인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관명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(공유수면관리청) 귀하

첨부서류	1. 점용·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(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) 2.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. 변경된 설계도서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·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권리자의 동의서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※ 첨부서류(점용·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) ※ 이 별지에서 "공유수면관리청"이란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처리기간 : 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: 14일
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: 7일
※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.

처리절차

